

<p><b>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조례안</b></p> <p>서울특별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b>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</b></p> <p><b>제 1 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하수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 2 조(사업의 범위)</b>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,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.</p> <p><b>제 3 조(관리·운영)</b> 회계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·운영한다.</p> <p><b>제 4 조(세입)</b>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수도사용료, 점용료, 부담금 및 과태료</li> <li>2.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</li> <li>3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li> <li>4. 기타수입금</li> </ol> <p><b>제 5 조(세출)</b>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하수도사업관련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</li> <li>2. 하수도 개량 및 정비비</li> <li>3.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</li> <li>4. 차입금 상환비</li> <li>5.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</li> </ol> <p><b>제 6 조(사무취급 예)</b>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<b>①(시행일)</b> 이 조례는 1996. 1. 1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②(채권·채무의 승계)</b> 이 조례 시행일부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중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채권·채무는 이 회계가 승계한다.</p>	<p><b>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폐지조례안</b></p> <p>서울특별시 상수도공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</p> <p><b>부 칙</b></p> <p><b>①(시행일)</b> 이 조례는 1996. 1. 1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②(경과조치)</b>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상수도공채의 상환 등에 관해서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<b>15.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(서울特別市長提出)</b> (16時 40分)</p> <p>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5項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 <p>都市整備委員會 金芳任議員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芳任議員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金芳任議員입니다.</p> <p>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, 그리고 先輩·同僚 여러 議員님, 이번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查한 서울特別市都市開發事業費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에 대한 審查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</p> <p>이번에 條例廢止를 하고자 하는 都市開發事業費特別會計는 89年 12月에 서울市가 宅地造成과 都市基盤設置 및 住宅建設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宅地開發促進法과 都市計劃法 및 住宅建設促進法에 근거하여 本條例를 制定하여 運營하였던 것이나 현재 서울市內는 대부분의 宅地開發事業地區의 開發事業이 거의 完了段階에 있으며, 또 新規로 開發할 土地資源도 고갈된 실정으로 本 特別會計의 設置目的이 거의 달성된 狀態입니다.</p> <p>또 이 條例의 規定에 따라 財政 收支上剩餘財源인 開發利益金이 있을 때에는 財政投資基金에 預託하여 다시 都市基盤施設事業에 融資하게 되므로 市 全體豫算으로는 二重 計上되는 등 실제豫算보다 過多한豫算을 編成하게 되어豫算上虛數가 發生되고, 또</p>
---	--